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PREAMBLE

Whereas the person or persons, partnership, firm or company named in the Schedul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ed") have made to the Company(Insurance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a written proposal bearing the date stated in the Schedule and containing particulars and statements which, together with any other information which may have been supplied, shall be the basis of contract and shall be considered as incorporated herein,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um stated in the Schedule.

INDEMNITY CLAUSE

The Company agrees, subject to the terms,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to indemnify the Insured against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liable to pay as damages and claimants' costs and expenses as a result of any claim or claims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tated in the Schedule arising out of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n the part of

- (a) the Insured
- (b) any employee or Director of the Insured, or
- (c)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firm or company acting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or about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

COSTS AND EXPENSES

The Company also agree to pay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the investigation, defense or settlement of any claim which falls to be dealt with under this Policy.

LIMIT OF THE COMPANY'S LIABILITY

Provided always that the Company's total aggregate liability under this Policy shall not exceed the Limit of Indemnity specified in the Schedule in respect of all claims (which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the investigation, defense or settlement of all claims)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any one Period of Insurance.

EXCESS CLAUSE

Provided further that the Company shall only be liable for that part of each and every claim (which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in the investigation, defense or settlement of claim) which exceeds the amount of the Excess stated in the Schedule.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claim" shall mean all claims attributable to or arising out of the same cause or event.

If any expenditure is incurred by the Company which by virtue of this claus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ured then such amount shall be reimbursed to the Company by the Insured forthwith.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ny Insured, The Company will, in respect of the liability incurred by the Insured, indemnify the Insured's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s in the terms of this Policy provided that such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s shall, as though they were the Insured, observe, fulfill and be subject to the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is Policy insofar as they can apply.

INDEMNITY TO DIRECTORS AND EMPLOYEES

If the Insured so requires, the Company will Indemnify any Director or employee of the Insured in like manner to the Insured, observe, fulfill and be subject to the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is Policy.

CONDITIONS

CLAIMS NOTIFICATION

- 1. The Insured shall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ny right to be indemnified under this Policy give to the Company immediate notice in writing.
 - (a) of any claim made against them, or
 - (b) of receipt of notice of an intention to hold the Insured responsible for any matter which could result in a claim under this Policy.

and shall in both cases give to the Company such information as the Company may reasonably require.

CLAIMS HANDLING

2. The Insured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ir right to be indemnified under this Policy shall not admit liability for or settle any claim or incur any costs or expenses in connection therewit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mpany who shall be entitled to take over and conduct in the name of the Insured the defense or settlement of any claim.

The Insured shall not be required to contest any legal proceedings unless a Counsel to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Insured and the Company shall advise that such proceedings should be contested.

The Insured shall be entitled at their own risk to contest any claim or legal proceeding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mpany should be compromised or settled provided that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osts or expen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Insured's refusal to compromise or settle such claim or legal proceedings.

WAIVER OF SUBROGATION AGAINST DIRECTORS OR EMPLOYEES

3. If any payment is made under this Policy and the Company are thereupon subrogated to the Insured's rights of recovery in relation thereto, the Company agree not to exercise any such rights against any director or employee of the Insured unless the claim is brought about or contributed to by the dishonest, fraudulent, criminal or malicious act or omission of the director or employee.

The Insured shall give all such assistance in the exercise of rights of recovery as Underwriters may reasonably require.

NOTIFICATION OF CIRCUMSTANCES

4. If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e Insured shall become aware of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which may subsequently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em and shall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give immediate written notice to the Company of such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then any claim which is subsequently made against the Insured arising out of those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Policy be dee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ADJUSTMENT OF PREMIUMS

5. If the premium for this Policy has been calculated on any estimates furnished by the Insured, the Insured shall keep an

accurate record containing all particulars relative thereto and shall at all times allow the Company or their duly appointed representative to inspect such records. The Insured shall within one month from expiry of the Period of Insurance furnish such particulars and information as the Company may require. The premium for such period shall then be adjusted and the difference paid by or allowed to the Insured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at the premium for any Period of Insurance shall not be less than the Minimum Premium stated in the Schedule.

CANCELLATION

6. This Policy may be cancelled by or on behalf of the Company by thirty days notice given in writing to the Insured and the premium hereon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 5, or if the premium has not been calculated on any estimates furnished by the Insured, on the basis of the Company receiving or retaining pro rata premium.

Notice shall be deemed to be duly received in the course of post if sent by pre-paid letter post properly addressed to the Insured's last known address.

DUE OBSERVANCE

7. The due observance of and compliance with the terms, provi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insofar as they relate to anything to be done or complied with by the Insured, shall be conditions precedent to any liability of the Company.

FRAUDULENT CLAIMS

8. If the Insured shall make any claim knowing the same to be false or fraudulent as regards amount, or otherwise, this policy shall become void and all claims thereunder shall be forfeited.

EXCLUSIONS

The Company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fy the Insured against any claim,

EMPLOYERS LIABILITY

(a)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bodily injury, sickness, disease or death sustained by any person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his/her employment by the Insured under any contract of service or apprenticeship, or for any breach of any obligation owed by the Insured as an employer to any employee

LAND. BUILDINGS ETC

(b)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wnership, possession or use by or on behalf of the Insured of any land, buildings, aircraft, watercraft, vessel or mechanically propelled vehicle

DISHONESTY

(c)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dishonest, fraudulent, malicious or illegal act or omission of the Insured

DEFAMATION

(d) alleging libel or slander

INFRINGEMENT

(e) arising from any Claims alleging infringement of trade mark, passing-off and/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those contained within the meaning of Wrongful Act. "Wrongful Act" shall mean any actual or alleged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unintentional breach of confidentiality, unintentional breach of copyright, unintentional infringement of patent or registered design, or unintentional use of the systems or programs of others.

CONTRACTUAL LIABILITY

(f)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liability assumed by the Insured under any express warranty, agreement or guarantee unless such liability would have attached to the Insured notwithstanding such express warranty, agreement or guarantee.

PRODUCTS

(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goods or products, sold, supplied, repaired, altered, manufactured, installed or maintained by the Insured or any related Company or by sub-contractors of the Insured.

BODILY INJURY/PROPERTY DAMAGE

(h) for bodily injury, sickness, disease, or death sustained by any person or any loss, damage or destruction of property unless such claim emanates from negligent advice, design, specification, formula or a breach of duty owed in a professional capacity by the Insured.

INSOLVENCY/BANKRUPTCY OF INSURED

(i) arising out of or rela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solvency or bankruptcy of the Insured

SEEPAGE & POLLUTION

(j) based upon, arising out of relating directly or in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 in consequence of or in any way involving, seepage, pollution or contamination of any kind

OTHER INSURANCE

(k) in respect of which the Insured are entitled to indemnity under any other insurance except in respect of any excess beyond the amount which is payable under such other insurance.

CIRCUMSTANCES KNOWN AT INCEPTION

(l) arising out of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of which the Insured is or are aware, or ought reasonably to be aware, at inception of this Policy, whether notified under any other insurance or not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EXPLOSIVE NUCLEAR ASSEMBLIES

- (m)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contributed to by or arising from
 - (i) ionising radiations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from any nuclear fuel or from any nuclear fuel or from any nuclear waste from the combustion of nuclear fuel
 - (ii) the radioactive, toxic, explosive or other hazardous properties of any explosive nuclear assembly or nuclear component thereof

LEGAL ACTION

(n) where action for damage is brought in a court of law outside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the Schedule, or where action is brought in a court of law within those territories to enforce a foreign judgment whether by way of Reciprocal Agreement or otherwise

FINES/PENALTIES

(o) for fines, penalties, punitive, multiple or exemplary damages

CLAIM

"Claim" shall mean:

- (i) any writ or summons or other application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r cross-claim or counter claim issued against or served upon the Insured for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r
- (ii) any written communication alleging a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communicated to the Insured.

PERIOD OF INSURANCE

The "Period of Insurance" means the period stated in the Schedule of the Certificate.

CLAIMS NOTIFICATION

- 1. (a) The Insured shall give to Underwriters immediate notice in writing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of:
 - 1.1. any Claim made against any Insured; or
 - 1.2. the receipt of notice from any person or entity of their intention to make a Claim against the Insured for the results of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r
 - 1.3. any circumstances of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aware which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give rise to a Claim being made against the Insured, giving reasons for the anticipation of such Claim, with full particulars as to dates and persons involved.

Such notice having been given as required by 1.2 or 1.3 above, any subsequent Claim mad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b) The Insured shall give Underwriters such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s Underwriters may reasonably require and shall not disclose to anyone the existence of this Certificate without Underwriters' consent.

DEFINITION

It is noted and agreed an Employee is deemed to be any person, including a trainee or consultant who is under contract of service

with the insured. For the avoidance of any doubt i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may also be a partner or director, or who is selected and placed by the insured with others in or about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

Subject otherwise to the several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e Policy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any liability for fines, penalties,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policy shall not apply to any accident or occurrence resulting from the hazardous properties of nuclear material if such accident or occurrence arises out of the ownership, use of operations by the insured of any nuclear facility other than the use of radioactive isotopes. For the purpose of this endorsement:

"Nuclear material", means sourc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or by-product material, "Sourc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By-product material" have the meanings given them in the 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act or in any law amendatory thereof; "Spent fuel" means any fuel element or fuel component, solid or liquid, which has been used or exposed to radiation in a nuclear reactor; "Waste" means any waste material (1) Containing by-product material and (2)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of any nuclear facility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nuclear

facility under paragraph (A) or (B) thereof:

"Radioactive isotope" means any by-product material except such material (1) contained in spend fuel or waste, or (2) discharged or dispersed from any nuclear facility;

"Nuclear Facility" means:

- (A) Any Nuclear Reactor:
- (B) Any equipment or device designed or used for (1) separating, the isotopes or uranium or plutonium, (2) processing or utilizing spent fuel, or (3) handling, processing or packaging waste:
- (C) Any equipment or device used for the processing, fabricating or alloying or special nuclear material if at any time the total amount of such material in the custody of the insured at the premises where such equipment or device is located consists of or contains more than 25 grams of plutonium or uranium 233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more than 250 grams of uranium 235:
- (D) Any structure, basin, excavation, premises or place prepared or used for the storage or disposal of waste.

And includes the site on which any of the foregoing is located, an operation conducted on such site and all premises used for such operations:

"Nuclear Reactor" means any apparatus designed or used to sustain nuclear fission in a self-supporting chain reaction or to contain a critical mass of fissionable material:

"Hazardous Properties: includes radioactive, toxic or explosive properties; with respect to injury to or destruction of property, the word "Injury" or "Destruction" includes all form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property.

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Claus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um charged,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or claim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liability assumed by the Insured under any express warranty, agreement or guarantee unless such liability would have attached to the Insured notwithstanding such express warranty, agreement or guarantee.

Consequential Loss Exclusion Clause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insurance excludes losses such as loss of profits, loss of revenue, loss of production, loss of business opportunity, loss of data, and loss of anticipated savings or benefits.

Exclusion of Terrorism

We will not pay for loss or damage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errorism, including action in hindering or defending against an actual or expected incident of terrorism. Such loss or damage is exclude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that contributes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to the loss.

Terrorism means activities against persons, organizations or property of any nature:

- 1. That involves the following or preparation for the following:
 - a. Use or threat of force or violence; or
 - b. Commission or threat of a dangerous act; or
 - c. Commission or threat of an act that interferes with or disrupt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or mechanical system; and

- 2. When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applies:
 - a. The effect is to intimidate or coerce a government or the civilian population or any segment thereof, or to disrupt any segment of the economy; or
 - b. It appears that the intent is to intimidate or coerce a government, or to further political, ideological, religious, social or economic objectives or to express (or express opposition to) a philosophy or ideology.

Regardless of the amount of damage and losses, in addition to items 1. and 2. above, this Terrorism Exclusion also applies to any incident of terrorism:

- 1. That involves the use, release or escape of nuclear materials, or that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s in nuclear reac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or
- 2. That is carried out by means of the dispersal or application of pathogenic or poisonous biological or chemical materials; or
- 3. In which pathogenic or poisonous biological or chemical materials are released, and it appears that one purpose of the terrorism was to release such materials.
- * Notwithstanding the above, this exclusion not be applied to any bodily injury caused by person accident risk.

Claims Co-operation Clause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Reinsurance Agreement and/or the Policy wording to the contrary, it is a condition

precedent to any liability under this Policy.

- a) The Reinsured shall, upon knowledge of any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em, advise the Reinsurers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ater than 30 days;
- b) The Reinsured shall co-operate with Reinsurers an / or their Appointed Representatives subscribing to this policy in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any loss and / o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loss;
- c) The Reinsured shall provide Reinsurers with copies of reports of experts / adjusters / surveyors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receipt by the Reinsured;
- d) No settlement and / or compromise shall be made and no liability admitted without prior approval from Reinsurers.

Extended Reporting Periods Endorsement

- 1. We will provide an 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 if you purchases it, an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 only if :
- a. This coverage Part is cancelled or not renewed for any reason except non-payment of the premium
- b. We renew or replace this Coverage Part with other insurance that:
- (1) Provides claims-made coverage for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and
- (2) Has a Retroactive Date later than the one shown in the Coverage Part's Declarations: or

- c. We replace this coverage Part with other insurance that applies to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ther than a claims-made basis.
- 2. If we provide an Extended Reporting Period, a claim first made during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last day of the policy period provided that the claim is for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before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of this policy(but not before any applicable Retroactive Date).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will not reinstate or increase the Limits of Insurance or extend the policy period.
- 3. The 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will be as set forth in either a. or b. below:
- a. 60 days, starting with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of this policy.
- b. Five years, starting with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of this policy. This 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 applies only to claims as a result of an occurrence" of which we are notified after the Retroactive Date, if any, shown in the Declaration but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end of the policy.
- 4. If you purchase the optional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will be an unlimited time, starting with the end of the period of this policy. We will issue that that Endorsement if the first Named Insured shown in the Declaration:
- (1) Makes a written request for it which we receive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policy period; and
- (2) Promptly pays the additional premium when due.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 will not take effect unless the additional premium is paid when due. If that premium is paid when due, the Endorsement may not be cancelled.

The insurance provided will be excess over any other valid and collectible insurance available to the insured, whether primary, excess, contingent or on any other basis, whose policy period begin or continues after the Endorsement takes effect.

We will determine the actual premium for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 in accordance with our rules and rates. In doing so, we may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 a. The exposures insured;
- b. Previous types and amount of insurance;
- c. Limit of Insurance available under this Coverage Part for future payment of damage; and
- d. Other related factors.

The Premium for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 will not exceed 200% of the annual premium for this Coverage Part to which the Endorsement would be attached and will be full earned when the Endorsement takes effect.

Co-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KR2013)

In the event of any claim, the Insurer shall indemnify the Insured for the amount of loss after deduct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insurance rate of the Insured, []% (a percentage set forth in the Schedule as a portion for which the Insured is liable) from the total indemnity amount(the total indemnity amount shall in no case exceed the limit of liability per claim) calculated pursuant to all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limit of liability and deductible under this policy.

Co-Insurance Clause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 1. The words "the Company" wherever used in this policy means the subscribing companies listed below.
- 2. The policy shall be liable only for its below designated proportion of any obligation assumed or expenses incurred under this policy.

Portion of 100%	Subscribing Companies		

Financial Adviser/Investment Counselors Additional Exclusion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to any claim based upon or arising out of the giving of investment advice or while acting as an investment counselor or financial advisor, or arising out of the failure to invest of the lack of performance of any investment or from any variation in the market value of any investment.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No (re)insurer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 and no (re)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laim or provide any benefit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cover, payment of such claim or provision of such benefit would expose that (re)insurer to any sanc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und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or the trade or economic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r United States of America.

Asbestos Exclusion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 1.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or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arising out of, resulting from, caused by, or contributed to by asbestos, exposure to asbestos or the use of asbestos;
- 2. Any damages or any loss, cost or expense arising out of any (i) claim or suit by or on behalf of any governmental authority or any other alleged responsible party because of, or (ii) request, demand, order or statutory or regulatory requirement that any insure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should be, or should be responsible for;
 - a. Assessing the presence, absence or amount or effects of asbestos;
 - b. Identifying, sampling or testing for, detecting, monitoring, cleaning up, removing, containing, treating, detoxifying, neutralizing, abating, disposing of or mitigating asbestos; or
 - c. Responding to asbestos in any way other than as described in 2.a and b. above;
- 3. Any supervision, Instructions, recommendations, warnings or advice given or which should have been given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subsections above; or
- 4. Any obligation to share damages with or repay someone else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subsections above.

Millennium Exclusion Clause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otherwise subject to the terms, exclusions, provision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e policy or endorsed thereon, the following shall apply to this insurance:

- A. Insurer(s) will not pay for Damage or Consequential Loss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sisting of, or arising from, the failure of any computer, data processing equipment or media, microchip, operating systems, microprocessors(computer chip), integrated circuit or similar device, any computer software, or any other products, and any services, data or functi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use or rely upon, in any manner, any of the items listed above, whether the property of the insured or not, that results from any actual or alleged failure, malfunction or inadequacy due to inability to correctly recognize, process, distinguish, interpret or accept any date as its true calendar date.
- B.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we will not pay for the repair or modification of any part of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or its related equipment, to correct deficiencies or features of logic or operation.
- C. It is further understood that we will not pay for Damage or Consequential Loss arising from the failure, inadequacy or malfunction or any advice, consultation, design evaluation, insp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r supervision provided or done by Insured to determine, rectify or test, any potential or actual failure, malfunction or inadequacy described in A. above. Such Damage or Consequential Loss described in A, B, or C above, is exclude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that contributed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War, Civil War, Political Risk and Terrorism Exclusion Clause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any liability assumed by the Reinsured for loss or damage or

cost or expense of what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or occasioned by or happening through or in consequence of war, invasion, acts of foreign enemies,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civil war, mutiny, civil commotion assuming the proportions of or amounting to popular rising, military rising, insurrection, rebellion, revolu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martial law, confiscation or nationalization or requisition or destruction of property by or under the order of any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terrorism or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preventing, suppressing or in any way relating to any of the above.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terrorism" means an act or acts(whether threatened or actual) of any person of persons involving the causing or occasioning of threatening of harm of whatever nature and by whatever means made or claimed to be made whole or in part for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or similar purposes.

If it is alleged by any Reinsurer that any claim is not covered by reason of this Clause,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reassured.

In the event that any part of this clause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Premium/Claim Payment Clause

1.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Premiums for this policy shall be paid or returned to the Company / Policyholder in Won currency applying to the first notified T/T Selling Rate of Exchange

by Hana Bank.

- ① Premiums: Date of Application
- 2 Additional Premiums / Return Premiums: Date of Endorsement
- 3 Refunds of Surrenders: Date of Surrender
- 4) Installment Premiums: Due Date
- 2.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claims paid shall be paid in Won currency applying to the first notified T/T Selling Rate of Exchange by Hana Bank or the 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equivalent to () currency at the date of loss payment.

[LMA5399]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II

-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Prior Acts Exclusion(Absolute)

Effective date of			Compa	iny :
This Endorsement:				
Issued to:				
	Endorseme	ent No.	:	1
	P	To be attached to And form a part of Policy No.:		

It is agreed that Section Exclusions: Exclusions Applicable to all Insuring Clauses is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 based upon, arising from, or in consequence of **Wrongful Acts** where all or any part of such acts were committed, attempted, or allegedly committed or attempted, prior to (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 unchanged.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를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번역문)

※ 본 번역문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번역문의 내용이 영문 약관과 배치될 경우에는 영어의 원뜻에 따라 해석됩니다.

전문

본 명세서에 기재된 개인이나 단체, 동업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우리회사(이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게 서면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서면 청약서에는 명세서에기재될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공될 수 있는 여타 정보와 함께 이 계약의기초가 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보험료의 고려사항이 되는 세부사항과 진술내용을 포함합니다.

담보조항

회사는 본 증권의 약정, 제한사항, 면책사항 그리고 보험조건 등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사람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여 본 명세서에 명기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의 결과 피보험자가 법률상부담하는 손해액과 배상청구자의 비용 및 경비를 보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 (a) 피보험자
- (b) 피보험자의 직원 및 임원
- (c) 피보험자를 위하여 또는 대표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어떤 다른 개인, 단체, 동업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

상기 사람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은 명세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용조항

회사는 또한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어떠한 배상청구와 관련한 조사, 방어 혹은 화해에 따른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지급할 것에 동의합니다.

보상한도액

이 증권에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상총액은 한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이 조항에서는 모든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화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 포함)에 대하여 본 명세서에 명기된 보상한 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조항

회사는 모든 손해배상청구(이 조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화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 포함)에 대하여 본 명세서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 과하는 손해액만을 보상합니다.

이 조항에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원인이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항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지출이 회사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 피보험자는 그 금액을 회사에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 의해 야기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증권의 약정,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상

만약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직원에게 이 증권의 약정,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보험조건

손해배상청구의 통지

- 1. 피보험자는 이 증권에서 보상받을 어떠한 권리에 선행하는 보험조건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a)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 (b)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이 두 가지 모든 경우에 회사가 마땅히 요구할 그러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2. 피보험자가 본 증권 아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소송 또는 화해를 인계 수행할 권리를 가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화해하거나 또는 비용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상호 동의한 변호인이 그러한 소송에 대해 다 툴 것을 권고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 소송도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의견으로는 절충 또는 화해해야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적 소송에 대해 피보험자가 거부함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그러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적소송을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아래서 다툴 권한이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

3. "회사"가 본 증권 아래서 어떤 금액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 취득할 경우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부정행위, 사기, 범죄행위, 악의적인 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한 피보험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상황의 통지

4.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나 사고를 알고 보험기간 동안 그러한 상황이나 사고에 대해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한 경우엔 그러한 상황이나 사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해 추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본 증권의 목적상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 정산

5. 본 증권에 대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추정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경우, 피보험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항시 "회사" 혹은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에게 그러한 기록을 조사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그러한 세부사항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가명세서에 기술된 최저보험료 보다 적지 않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지불하거나 돌려받습니다.

해지

6. 본 증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30 일간의 서면통지로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해지될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조건 5 번에 따라 정산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추정액에 근거하여 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영수한 또는 보유한 비례보험료에 근거해서 정산합니다.

통지는 피보험자의 최종 통지된 주소에 요금선납우편으로 적절하게 발송된 경우 우편과정에서 정당하게 수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절한 준수

7. 본 증권의 약정, 조항 그리고 조건에의 적절한 준수와 순응은 그것이 피보험자가 행한 그리고 순응한 사항과 관련되는 한, 회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8. 피보험자가 금액 또는 그 밖의 것과 관련하여 거짓 혹은 사기임을 알면서도 손해보상청구를 할 경우 이 증권은 무효가 되며 이 증권하의 모든 손해보 상청구권은 상실됩니다.

면책조항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

(a) 용역계약이나 도제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질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피보험자가 고용주로서 피용인 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빌딩 등

(b)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표하여 토지, 빌딩, 항공기, 배, 선박 또는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 인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

(c)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나 태만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d) 주장된 중상이나 비방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권리침해

(e) "과실행위" 이외의 상표권침해, 도용, 지적소유권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과실행위"란 사실상 혹은 주장된 부주의행위, 과실이나 태만, 의도하 지 않은 기밀누설,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침해, 의도하지 않은 특허권이나 등록상표침해, 또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사 용을 말합니다.

계약상배상책임

(f) 피보험자가 명시적 담보, 약정, 보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명시적 담보, 약정, 보증 하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지게 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생산물

(g) 피보험자 혹은 관련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의해 판매, 공급, 수리, 변경, 제조, 설치, 또는 유지되어진 상품이나 제품으로 야기된 또는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장해/재물손해

(h)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피보험자가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야기시키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조언, 디자인, 기술서, 방식 또는 의무의 위반에 기인된것이 아니라면, 어떤 개인이 입게 되는 신체장해, 질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재물의 손실, 손상,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보험자의 파산/도산

(i) 직접, 간접적으로 피보험자의 파산이나 도산으로 야기되거나 혹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유출 및 오염

(j)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그것의 결과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누출, 오염 또는 오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타 보험과의 관계

(k)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분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에서 피보험 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약 체결시 알려진 상황

(1) 다른 보험계약하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시점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방사능오염과 폭발성 핵구조물

- (m)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아래에 기재된 원인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i) 핵연료나 핵연료 연소에 따른 핵폐기물로부터의 방사능에 의한 이온 화된 방사선 또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 (ii) 폭발성 핵 구조물 혹은 그것의 핵성분으로 인한 방사성, 중독성, 폭발성 혹은 기타 위험한 속성

소송

(n) 본 증권에 명기된 담보지역 밖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상호 협약이나 기타 약정에 관계없이 본 증권에 명기된 담보지역 내의 법정에서 외국판결을 강제하도록 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벌금, 과태료

(o) 벌금, 과태료, 배수의 또는 징벌적 손해

징벌적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원자력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 거나 방사선에 노출된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 (1) 부산물을 포함하며
-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A) 모든 원자로
- (B)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 (D)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형태의 방사능 오염물 포함합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부과된 보험료를 고려하여, 명시적 보증, 계약 또는 보장에 대한 책임이 피보 험자에게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에 관련한 어떠한 손실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 니다. 단, 그러한 보증, 계약, 또는 보장에 대한 책임이 없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결과적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수익, 수입, 생산, 비즈니스 기회, 데이터, 예상된 예금 또는 혜택의 손실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 항 또는 2 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손해조사 협조 조항

- 이 특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이 증권상 담보하는 배상책임 발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 a) 원 보험사는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만한 정황을 인지하면 바로 재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b) 원 보험사는 배상청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c) 재보험자는 위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합의, 협상 등을 대행할 손해 사정인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습니다.
- d)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이루어지거나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보고연장기간

-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A. 보험료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의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 B. 회사가 이 보험을 아래의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 (1)「신체장해」및「재물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 (2) 이 보험증권신고란 기재의 소급일 이후의 날짜를 소급일로하는 보험
- C.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기준이외의 기준으로「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 2.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보고연장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 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일과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신체장해」 또는「재물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한합니다.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자동보고연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A 또는 B 와 같습니다.
- A.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 B.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기간은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된 경우 그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발생의 통지는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의무에 해당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4. 선택적인 보고연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기명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회사는 보고연장기간배서를 발행합니다.
-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령하고
- (2) 납일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납일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 배서의 효력발생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보험이 있는 경우 그다른 보험이 제1순위의 보험, 초과보험, 부차적인 보험 또는 다른방식에 의한보험일 경우에도 이 보험은 그러한 다른보험의 초과보험이 됩니다.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의 규칙 및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 A. 보험대상으로 되는 보험
- B. 과거의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액
- C. 이 보험증권하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 액
- D. 기타 관련되는 사항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그 배서가 첨부되는 보험증권의 연간보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서의 효력발생시까지 모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공동보험조항(KR2013)

회사는 각 청구 건에 대하여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의 보험조건에 따라 산출된 금액(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에서 이에 대한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Co-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 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동보험조항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 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서명 회사: 전체 100%

재무 /투자 조언 담보 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투자자문의 제공 또는 투자 상담원이나 재무고문의 역할을 하는 동안 또는 투자실적의 부족이나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실패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석면 부보장 특별약관

- 이 보험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석면, 석면에 노출, 석면사용 등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기인되거나, 발생되거나 또는 원인이 된 신체손해, 재산손해,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등;

- 2. 어떠한 정치적 권력 또는 증거 없이 주장된 책임부분에 있는 또는 의한 어떠한 배상청구 및 소송 또는 어떠한 피보험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법인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거나 또는 책임져야만 하는 요청, 요구, 명령 또는 법령 또는 규정된 필요항목으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 비용 등;
 - a. 석면의 존재여부, 양 또는 효과 등의 감정;
 - b. 확인, 견본추출 또는 검사, 탐지, 측정, 청소, 제거, 보관, 취급, 해독, 중화, 감소, 처분 또는 완화; 또는
 - c. 상기 2.a 및 2.b에 기술된 것과 다른 방식의 석면 반응;
 - 3. 상기 일부 사항에 관한 어떠한 감독, 지시, 추천, 경고 또는 부여되었거나 부여된 권고 또는; 또는
 - 4. 상기 일부사항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의 손해를 분담하거나 보상할 어떠한 책임.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 A. 우리회사는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 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C. 회사는 상기 A. 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 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A, B, C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쟁, 내전, 정치 리스크, 테러리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조항은 전쟁이 선언되던 선언되지 아니하던지에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쟁, 침략, 외세개입, 적대행위, 내전, 반란, 소동, 봉기, 쿠데타, 군사혁명, 권력찬탈, 계엄령, 정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몰수 또는 국유화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방어 및 억제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테러"는 (단순한 위협 또는 실제 행위에 불문하고) 정치, 종교, 이념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항으로 인해 재보험사에서 어느 배상청구에 대해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재보험사에서 반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일부분이 무효화 또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항목들은 유효합니다.

보험료/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 1. 당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보험료: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 ③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 ④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 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염병 면책 조항 Ⅱ

- 1.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2. 본 특별약관 상에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 는 불문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이전행위 부보장 특별약관

배서의 효력발생일: 보험회사: 피보험회사: 배서번호:

이 배서는 아래 증권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증권번호 :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면책조항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 년 월 일 이전에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범해지거나, 시도되거나, 또는 범하여지거나 시도되었다고 주장되는 부당행위에 근거하거나, 기인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된 배상청구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

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를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